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관세청에서 관장하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해양수산부에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을 관세청에서 이체하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을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재배치하며,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정원 2명(5급 2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 6명(5급 6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국제업무와 수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 및 수산정책실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20.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수산 부문 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6. 해양수산 부문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업무

제5조제5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15. 해양수산 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
시행

제7조제2항 중 “해양산업정책관 · 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원양정책관”을
“해양정책관 · 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본문 중 “해양정책과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해양개발과 · 해양
레저관광과 · 해양영토과 · 해양환경정책과 · 해양공간정책과 · 해양보전
과 · 해양생태과 ·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국제협력총괄과 · 원양산업”을
“해양정책과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해양개발과 · 해양레저관광과
· 해양환경정책과 · 해양공간정책과 · 해양보전과 · 해양생태과 · 해양수
산생명자원과 · 국제협력총괄과 · 해양영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
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국제원양정책관”을 “국제협력정책

관”으로 하며, 제17항 중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양정책과장·해양수산물과학기술정책과장·해양개발과장·해양레저관광과장 및 해양영토과장”을 “해양정책관은 해양정책과장·해양수산물과학기술정책과장·해양개발과장 및 해양레저관광과장”으로 하고, 제19항 중 “국제원양정책관은 국제협력총괄과장·원양산업과장 및 통상무역협력과장”을 “국제원양정책관은 국제협력총괄과장·해양영토과장 및 통상무역협력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산정책과·유통정책과·수출가공진흥과·소득복지과”를 “수산정책과·유통정책과·수출가공진흥과·소득복지과·원양산업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수산정책과장·유통정책과장·수출가공진흥과장 및 소득복지과장”을 “수산정책과장·유통정책과장·수출가공진흥과장·소득복지과장 및 원양산업과장”으로 한다.

⑧ 원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및 원양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2. 원양산업 인력 육성 및 정책자금의 지원·운영
3. 원양산업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
4. 한·러 어업협정의 운영 및 실무협상
5. 한·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방지협정 이행
6. 원양수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및 통계·조사
7.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8. 원양어업 안전조업 지도
9. 원양어선원 복지의 확충
10. 해외합작 원양어업의 관리·지원 및 해외합작 수산물의 관세감면
물량 협의·추천
11. 한국원양산업협회의 육성·지원
12. 해외신어장 개발 및 지원
13. 원양어업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조치 이행에 관한 업무
14. 원양산업 관련 법·제도 운영
15. 원양어선의 감시·감독·통제(MCS)에 관한 업무
16. 원양어선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관한 업무
17. 원양어선 항만국 검색에 관한 업무
18. 해외 원양선원 묘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44조의2를 제44조의3으로 하고,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수산자원정책과, 지도교섭과, 어선안전정책과
2. 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제44조의2 앞에 “제11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삭제한다.

제44조의3 앞에 “제11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삽입한다.

별표 16 총계 “581”을 “582”로 하고, 일반직 계 “577”을 “578”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종전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2(종전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4)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을 신설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99”를 “20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9 다음에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해양수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2”를 신설한다.

별표 17 총계 “583”을 “584”로 하고, 일반직 계 “579”을 “580”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종전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3(종전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5)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을 신설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93”를 “194”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9 다음에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해양수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2”를 신설한다.

별표 18 총계 “265”를 “27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63”을 각각 “270”으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전산주사 “72”를 “7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

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71”을 “74”로 하며,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7”을 “50”으로 한다.

별표 18의2 총계 “266”을 “27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64”를 각각 “271”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전산주사 “74”를 “75”로 하고,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70”을 “73”으로 하며,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7”을 “50”으로 한다.

별표 21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44”를 “38”로 하고,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24”를 “225”로 하며,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 다음에 “행정전문관·해양수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6”을 신설하고, “선박기관운영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21의2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44”를 “38”로 하고,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27”을 “228”로 하며, 선박항해운영주사보 2 다음에 “행정전문관·해양수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6”을 신설하고, “선박기관운영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24 총계 “1,253”을 “1,25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251”을 각각 “1,255”로 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 “409”를 “41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등대관리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39”를 “340”으로 하며,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등대관리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19”를 “221”로 한다.

별표 25 총계 “1,256”을 “1,26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254”를 각각 “1,258”로 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해양수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 “410”을 “411”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등대관리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42”를 “343”으로 하며,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서기·등대관리서기·운전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13”을 “215”로 한다.

별표 28의2 총계 및 일반직 계 “55”를 각각 “50”으로 하고, 5급 이하 “54”를 “49”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③ (생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미래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해양수산 부문 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u>
<u><신 설></u>	6. <u>해양수산 부문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업무</u>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15. <u>해양수산 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⑦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해양수산 부문 정보의 공동</u>	<u><삭 제></u>

활용에 관한 업무

5. ~ 17. (생략)

18. 해양수산 부문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업무

⑧·⑨ (생략)

제7조(해양정책실) ① (생략)

② 해양산업정책관·해양환경
정책관 및 국제원양정책관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
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해양정책실에 해양정책과·
해양수산물과학기술정책과·해양
개발과·해양레저관광과·해양
영토과·해양환경정책과·해양
공간정책과·해양보전과·해양
생태과·해양수산생명자원과·
국제협력총괄과·원양산업과
및 통상무역협력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서기
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
다.

5. ~ 17. (현행과 같음)

<삭제>

⑧·⑨ (현행과 같음)

제7조(해양정책실) ① (현행과 같
음)

② 해양정책관·해양환경정책
관 및 국제협력정책관-----

-----.

③ ----- 해양정책과·
해양수산물과학기술정책과·해양
개발과·해양레저관광과·해양
환경정책과·해양공간정책과·
해양보전과·해양생태과·해양
수산생명자원과·국제협력총괄
과·해양영토-----

-----.

--.

④ ~ ⑦ (생략)

⑧ (생략)

⑨ ~ ⑬ (생략)

⑭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0. (생략)

31. 그 밖에 국제원양정책관의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
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⑮ 원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및 원
양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2. 원양산업 인력 육성 및 정책
자금의 지원·운영

3. 원양산업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

4. 어업협정(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은 제외한다)의 운영
및 실무협상

5. 한·러 불법·비보고·비규
제 어업(IUU) 방지협정 이행

6. 원양수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및 통계·조사

7.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8. 원양어업 안전조업 지도

④ ~ ⑦ (현행과 같음)

⑮ (현행 제8항과 같음)

⑨ ~ ⑬ (현행과 같음)

⑬ -----
-----.

1. ~ 30. (현행과 같음)

31. ----- 국제협력정책관-----

<삭 제>

9. 원양어선원 복지의 확충
10. 해외합작 원양어업의 관리
 - 지원 및 해외합작 수산물의
 - 관세감면 물량 협의 · 추천
11. 한국원양산업협회의 육성 ·
지원
12. 해외신어장 개발 및 지원
13. 원양어업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조치 이행에 관한 업무
14. 원양산업 관련 법 · 제도 운
영
15. 원양어선의 감시 · 감독 · 통
제(MCS)에 관한 업무
16. 원양어선의 불법 · 비보고 ·
비규제(IUU) 어업에 관한 업
무
17. 원양어선 항만국 검색에 관
한 업무
18. 해외 원양선원 묘지의 관리
에 관한 업무
- ①⑥ (생 략)
- ①⑦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양정책
과장 · 해양수산물과학기술정책과
장 · 해양개발과장 · 해양레저관
광과장 및 해양영토과장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해양정책실장을

①⑥ (현행과 같음)

①⑦ 해양정책관은 해양정책과장
· 해양수산물과학기술정책과장 ·
해양개발과장 및 해양레저관광
과장 -----

보좌한다.

⑮ (생 략)

⑯ 국제원양정책관은 국제협력
총괄과장·원양산업과장 및 통
상무역협력과장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해양정책실장을 보좌한
다.

제8조(수산정책실) ①·② (생
략)

③ 수산정책실에 수산정책과·
유통정책과·수출가공진흥과·
소득복지과·어업정책과·수산
자원정책과·지도교섭과·어선
안전정책과·어촌양식정책과·
양식산업과 및 어촌어항과를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
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
다.

④ ~ ⑦ (생 략)

<신 설>

-----.

⑮ (현행과 같음)

⑯ 국제협력정책관은 국제협력
총괄과장·해양영토과장 ----

--.

제8조(수산정책실)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수산정책과·
유통정책과·수출가공진흥과·
소득복지과·원양산업과-----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원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및 원
양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2. 원양산업 인력 육성 및 정책
자금의 지원·운영
3. 원양산업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

4. 한·러 어업협정의 운영 및
실무협상

5. 한·러 불법·비보고·비규
제 어업(IUU) 방지협정 이행

6. 원양수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및 통계·조사

7.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8. 원양어업 안전조업 지도

9. 원양어선원 복지의 확충

10. 해외합작 원양어업의 관리
· 지원 및 해외합작 수산물의
관세감면 물량 협의·추천

11. 한국원양산업협회의 육성·
지원

12. 해외신어장 개발 및 지원

13. 원양어업 관련 국제규범의
국내조치 이행에 관한 업무

14. 원양산업 관련 법·제도 운
영

15. 원양어선의 감시·감독·통
제(MCS)에 관한 업무

16. 원양어선의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에 관한 업
무

17. 원양어선 항만국 검색에 관

⑧ ~ ⑭ (생략)

⑮ 수산정책관은 수산정책과장
· 유통정책과장 · 수출가공진흥
과장 및 소득복지과장의 소관사
무에 관하여 수산정책실장을 보
좌한다.

⑯ ~ ⑰ (생략)

<신설>

제11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4조의2 (생략)

한 업무

18. 해외 원양선원 묘지의 관리
에 관한 업무

⑨ ~ ⑮ (현행 제8항부터 제14
항까지와 같음)

⑯ 수산정책관은 수산정책과장
· 유통정책과장 · 수출가공진흥
과장 · 소득복지과장 및 원양산
업과장-----
-----.

⑰ ~ ⑱ (현행 제16항부터 제1
7항까지와 같음)

제4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
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
직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수산자원정책과, 지도교섭과,
어선안전정책과

2. 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어
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삭제>

제44조의3 (현행 제44조의2와 같

<u><신 설></u>	음) <u>제11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u> <u>정원</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81</u>	<u>582</u>	+1
·	·	·	
·	·	·	
일반직 계	<u>577</u>	<u>578</u>	+1
·	·	·	
·	·	·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u>12</u>	<u>11</u>	-1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 관 또는 수석전문관	<신 설>	<u>1</u>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4</u>	<u>32</u>	-2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신 설>	<u>2</u>	+2
·	·	·	
·	·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 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방 재안전사무관	<u>195</u>	<u>193</u>	-2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 설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환경주 사 · 방재안전주사 · 운전주 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	<u>199</u> · ·	<u>200</u> · ·	+1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해 양수산전문관 또는 방송통 신전문관	<u><신 설></u>	<u>2</u>	+2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83</u>	<u>584</u>	+1
·	·	·	
·	·	·	
일반직 계	<u>579</u>	<u>580</u>	+1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u>12</u>	<u>11</u>	-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 관 또는 수석전문관	<신 설>	<u>1</u>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5</u>	<u>33</u>	-2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신 설>	<u>2</u>	+2
·	·	·	
·	·	·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 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 재안전사무관	<u>202</u>	<u>200</u>	-2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	<u>193</u> · ·	<u>194</u> · ·	+1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해양수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u><신 설></u>	<u>2</u>	+2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5</u>	<u>272</u>	+7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63</u>	<u>270</u>	+7
일반직 계	<u>263</u>	<u>270</u>	+7
.	.	.	
.	.	.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전산주사	<u>72</u>	<u>73</u>	+1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 보·전산주사보·운전주 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u>71</u>	<u>74</u>	+3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 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u>47</u>	<u>50</u>	+3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의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6</u>	<u>273</u>	+7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64</u>	<u>271</u>	+7
일반직 계	<u>264</u>	<u>271</u>	+7
.	.	.	
.	.	.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전산주사	<u>74</u>	<u>75</u>	+1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 보·전산주사보·운전주 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u>70</u>	<u>73</u>	+3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 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u>47</u>	<u>50</u>	+3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 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 관 ·	· · <u>44</u> ·	· · <u>38</u> ·	-6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 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 사보·방송통신주사보· 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 ·조리주사보·간호주사 보 또는 운전주사보 · ·	· · <u>224</u> · ·	· · <u>225</u> · ·	+1
행정전문관·해양수산전문 관·방송통신전문관	· · <u><신 설></u>	· · 6	+6
<u>선박기관운영주사보</u>	<u>1</u>	<u><삭 제></u>	-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의2]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 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 관 ·	· · <u>44</u> ·	· · <u>38</u> ·	-6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 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 사보·방송통신주사보· 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 ·조리주사보·간호주사 보 또는 운전주사보 · ·	· · <u>227</u> ·	· · <u>228</u> ·	+1
행정전문관·해양수산전문 관·방송통신전문관	· · <u><신 설></u>	· · 6	+6
<u>선박기관운영주사보</u>	<u>1</u>	<u><삭 제></u>	-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의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6</u>	<u>273</u>	+7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64</u>	<u>271</u>	+7
일반직 계	<u>264</u>	<u>271</u>	+7
.	.	.	
.	.	.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전산주사	<u>74</u>	<u>75</u>	+1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 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 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u>70</u>	<u>73</u>	+3
행정서기 · 해양수산서기 · 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u>47</u>	<u>50</u>	+3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53</u>	<u>1,257</u>	+4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251</u>	<u>1,255</u>	+4
일반직 계	<u>1,251</u>	<u>1,255</u>	+4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	<u>409</u>	<u>410</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등대관리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39</u>	<u>340</u>	+1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 서기 · 방송통신서기 · 환 경서기 · 해양수산서기 · 등대관리서기 · 운전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방 호서기 · ·	<u>219</u> · ·	<u>221</u> · ·	+2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56</u>	<u>1,260</u>	+4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254</u>	<u>1,258</u>	+4
일반직 계	<u>1,254</u>	<u>1,258</u>	+4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	<u>410</u>	<u>411</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등대관리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42</u>	<u>343</u>	+1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 서기 · 방송통신서기 · 환 경서기 · 해양수산서기 · 등대관리서기 · 운전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방 호서기 · ·	<u>213</u> · ·	<u>215</u> · ·	+2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8의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5</u>	<u>50</u>	-5
일반직 계	<u>55</u>	<u>50</u>	-5
·	·	·	
5급 이하	<u>54</u>	<u>49</u>	-5